

태국 비관세장벽 이슈

Thailand Non Tariff Barriers Issue

태국, 수입 식품에 사전 판매 허가 취득 및 올바른 라벨 표시 권고



태국 식품의약품청, 수입 식품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해 사전 허가 및 태국어 라벨 부착 권고

태국 식품의약품청(FDA)은 수입 식품에 대해 사전 판매 허가 취득 및 올바른 태국어 라벨 표시를 해줄 것을 권고함. 이에 본 기사는 태국에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수입식품 허가 및 제품 등록 제도, 태국의 라벨 표시 사항에 대해 정리하여 제공함

1. **배경** : 태국 FDA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태국어로 작성된 적법한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수입 식품의 판매를 조사 중에 있음. 태국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태국어 라벨과 식품의약품청 번호가 있는 수입식품의 구매를 권장함. 식품 수입 업자 및 유통업자에는 용기에 포장되거나 개봉 후 즉시 섭취 가능한 상태로 포장된 모든 가공 식품에 대해 식품명, 식품의약품청 번호, 성분, 함유량, 수입 업체명 및 주소, 유통기한을 포함한 태국어 라벨의 부착을 권고함. 또한, 온라인 유통업체는 판매되는 제품의 중량, 부피, 향료 및 알레르기 유발 물질 식품 첨가물에 대한 정보를 표기하여야 함. 이를 위반할 시 30,000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2. 주요 내용

1) 수입식품 허가 및 식약청 제품 등록 제도

① 수입허가 취득

• 태국 수입업체는 태국 FDA 공중보건부의 온라인 제출시스템 ([SKYNET](#))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태국 수입허가 취득 제출 서류			
㉠	수입허가 신청서	㉡	수입처 등록증 사본
㉢	사업자 ID 및 여권 사본	㉣	식품 참고등록증 사본
㉤	사업자 거주지 등록증 사본	㉥	장소 허가증
㉦	법인 등록증 및 회사통장 사본	㉧	참고 주소, 구조 및 시설 설명도

• 발급된 수입허가는 3년간 유효함

② 식약청 제품 등록

- 태국 FDA는 식품 유형을 아래 표와 같이 4가지로 분류함(원문)
- 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 및 처리기간이 상이함

태국 FDA의 식품 유형		
특별 관리 식품	식품유형	- 소비자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위험도가 높은 식품 - 영유아용 식품, 식이보충제 등 체중조절용 식품, 식품첨가물 등
	요구사항	- 식약청에 제품 등록 후 식품일련번호 발급 필요 - 태국 FDA 전자 제출 시스템
규격 식품	식품유형	- 특별 통제 식품보다 위험도는 낮지만, FDA 규정 및 품질 표준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식품 - 커피, 소금, 크림, 전해질 음료, 초콜릿, 차 등
	요구사항	- 품질과 관련한 특별한 표준 만족해야 하나 제품 등록 불필요
표준 표시 의무 식품	식품유형	- 특별 통제 식품이나 표준 식품에 해당하지 않은 식품 - 빵, 현미 가루, 소스류, 육류 제품, 향신료, 즉석 식품 등
	요구사항	- 품질 표준을 준수하며, 표준화된 라벨 부착 필요
일반 식품	식품유형	- 위험도가 가장 낮으며 식약청 식품 등록이 불필요한 식품 - 동물성 제품, 식물성 제품, 밀가루 및 밀가루 제품, 설탕 등
	요구사항	- 생산이나 수입을 위한 등록 불필요

2) 사전포장식품 라벨 표기

① 라벨 표시 사항

라벨 표기사항	표기사항 가이드 (일부)
표기 언어	- 태국어 표기가 원칙임 - 식품명, 성분, 식품 일련번호, 순중량, 원산지는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기
제품명	- 소비자의 눈에 띄는 곳에 식품명과 구분되도록 표기
식품 일련번호	- 태국 FDA 등록 후 발급 받은 번호 표기
판매자 정보	- 수입 식품은 수입자와 생산자의 이름과 국가(주소)를 표기
순중량	- 미터법에 따라 순중량(고체, 기타 식품) 또는 순부피(액체) 표기
성분	- 중량 백분율 내림차순으로 표기하되, 일정 조건 만족 시 주요 성분만 표기 가능
식품첨가물	- 국제 번호 INS를 사용하여 성분을 정의하고 특정 이름과 기능을 표기
알레르기 정보	-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을 라벨에 표기
인공 조미료	- '천연 인공 향 첨가', '인공 향 첨가'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표기
유통기한	- 유통기한을 포장 하단이나 다른 곳에 표기하는 경우 위치를 표기
표시 기준	- 수입되기 전 라벨이 반드시 부착되어 있어야 함 - 특별 통제 식품인 경우에만 사전 승인된 라벨을 요구함

② 라벨 표시 위반 시 조치사항

- 이를 위반할 시 30,000바트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출처

Chemlinked food, Thailand Implements New Nutrition Labeling Regulations, 2024.01.12

태국 식품의약품안전청, อย. แนะนำอาหารนำเข้าต้องมีฉลากภาษาไทย และ อย., 2024.04.04

Kati, 2023 태국 국가조사 보고서